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46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462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소37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홍성애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소37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2. 20.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력이 없으니 카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를 통해 듣고 이에 속아 카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2. 24.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인출금원을 모두 대출설계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에게 전달하였던 점[원고는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C에 대한 거래내역서(을나 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2,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송금과 무관하게 2019. 4. 25.부터 2020. 3. 25.까지 12회에 걸쳐 각 1,176,985원을, 2020. 4. 9. 22,310,020원을 각 C 계좌에 송금하여 기존에 있던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음], ② 피고가 위 금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위 범죄 관련자로부터 별도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2,000만 원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